

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비 반환기준

안내사항

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비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, 교육 신청 전 본 서식의 내용 확인 및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교육의 폐강 등 협회의 사정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		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교육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	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육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전액
		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육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등의 전액
		교육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육비등(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육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- 총 교육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육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육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

위와 같이 귀 협회의 교육비 반환기준을 확인하였고, 위 기준에 따른 교육비 반환절차 진행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:

(서명 또는 인)